

브라보 시니어케어 광역센터 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 기간

-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 기간 범위 내에서 기본적으로 매년 초부터 매년 말일까지로 한다.
- 계약 기간의 만료, 장기요양 인정 갱신, 등급 변경,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의 변경, 급여제공계획서 변경 등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4년 기준)

1) 월 이용료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단위: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1회 방문당, 단위: 원)〉

방문요양 급여종류	수가	2023년 본인부담금		
		15%	9%	6%
30분	16,630	2,490	1,490	990
60분	24,120	3,610	2,170	1,440
90분	32,510	4,870	2,920	1,950
120분	41,380	6,200	3,720	2,480
150분	48,250	7,230	4,340	2,890
180분	54,320	8,140	4,880	3,250
210분	60,530	9,070	5,440	3,630
240분	66,770	10,010	6,000	4,000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1회 방문당, 단위: 원)〉

방문목욕 급여종류	수가	2023년 본인부담금		
		15%	9%	6%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12,700	7,620	5,080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11,450	6,870	4,580
차량 미 이용	47,670	7,150	4,290	2,860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 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 시각	금액
18시 이후 22시 이전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본인부담률〉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타 의료수급권자 의료 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로 중위 소득 51 ~ 100%	9%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로 중위 소득 50% 이하	6%
기초수급권자	0%

2) 이용료 부담

- 브라보 시니어케어 광역센터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매월 5일 이내에 정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0일까지 서면으로 청구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청구된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당월 2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계좌 이체, 카드 결제, 현금 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 단,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하며 납부일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가능하다.
- 브라보 시니어케어 광역센터 기관은 이용료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 수급자(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수급자(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 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 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연 및 생활 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 급여 계획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게 통보
- 수급자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 기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 요양보호사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금지

5. 계약의 해지

1) 해지 요건

① 기관 해지 사유

-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해지 사유

-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해지

- 기관은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 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 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